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6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2026년 2월 13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지원하는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 향상,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의2제1항),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의2제3항), 지원센터의 수행 업무(안 제20조의2제4항)¹⁾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요건(안 제20조의2제5항)²⁾ 등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함.

1)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사업, 가사근로자의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가사근로자의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가사서비스 인식 개선 사업,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지원 및 운영 지원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향상,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개발 사업 2.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사항 위반한 업무 수행, 지정요건 부적합, 목적 외 지원비용 사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현행	개정안
	4. <u>가사근로자의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u> 5. <u>가사서비스 인식 개선 사업</u> 6. <u>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지원 및 운영 지원 사업</u> 7. <u>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u> 8. <u>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u> ⑤ <u>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u> 3. <u>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4. <u>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나. 검토의견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직업소개소 또는 사인을 매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인증기관이 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함으로써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22년 6월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정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³⁾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전담 수행기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경비 지원,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센터가 상담, 교육, 권익보호, 근로조건 개선 지원, 안전보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사근로자 지원정책의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편,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인증기관 전환의 활성화 등 현행법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사서비스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고충처리·법률상담, 가사근로자법 홍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조 등을 수행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회적협동조합품애	
운영방식	공개 경쟁(공모)을 통해 전문성이 축적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협상 후 위탁계약 체결	
사업내용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인증기관 및 가사근로자 수요조사, 고충처리·법률 상담 결과 등에 기반하여 자체 특화 훈련과정(청소·세탁·음식조리, 돌봄·양육 등 직무교육, 고객응대·노동권·안전보건 교육) 설계
	고충처리·법률상담	공인노무사 등 활용하여 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인증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고충·법률문제(가사근로자법 및 노무관리, 4대보험·연차·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담
	가사근로자법 홍보·캠페인	가사근로자가 ‘당당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상승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연계 및 협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 인증과 연계하여 확산 유도
운영예산	700백만원 (250백만원 × 2개소, 200백만원 × 1개소)(부가세 포함)	

현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센터 지정과 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입법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민간기관을 선정 후 협상을 거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교체 또는 운영방식의 조정 등 집행의 유연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21조⁴⁾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의 근거⁵⁾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
-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서도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어, 실태조사 주체의 이원화, 조사 범위의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조문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으로 보임.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법률에 센터의 명칭,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은 지정된 기관의 도덕적 해이, 비효율적 운영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②“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매년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5